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
----------	-----------

제안일자 : 2018년 11월 2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2017년 9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도 추가함(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호번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중 “범위에서 수당”을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u>범위에서</u>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 --<u>심의·자문하기</u> ----- ----- -----.</p> <p>1. (조례안과 같음)</p> <p>2. <u>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u></p> <p>3. ----- -----</p> <p>4. -----</p> <p>5. ----- -----</p> <p>제10조(수당 등) ----- ----- ----- <u>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u> -----.</p>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

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